

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자체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시가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용역, 교육, 학술회의,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조제1항 단서)

3. 참고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1부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교류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자체적으로 용역, 교육, 학술회의,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사업의 범위)</p> <p>① 이 사업은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의 정부·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과의 문화·학술·체육·관광·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에 관한 사업(이하 “남북교류 협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함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2조(사업의 범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다만, 교류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자체적으로 용역, 교육, 학술회의,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.</u></p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